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7. 2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7월 10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0년 7월 13일

라. 상정일자: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7. 20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안전교통국장 지우선)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 신설
(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, 제4항)

-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-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의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 신설(안 제4조의3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선영)

- 본 건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·정비 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으로
 - 안 제4조에서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하였고
 - 안 제4조의2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
 - 안 제4조의3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의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.
따라서 치료비 등 지원항목 추가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,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관련 규정 신설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회재난 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5. 소수의견의 요지(권영식 의원)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,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재산상의 부당한 이익 등을 볼 수 있는 잘못된 폐단을 엄격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4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7. 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」는 사회재난 발생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·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 신설(안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, 제4항)

나.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규정 신설(안 제4조의2)

다.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의 구상에 따른 책임 규정 신설(안 제4조의3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(2020. 6. 11. ~ 7. 1./ 20일 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

제4조제2항 “지원기준은”을 “지원 기준은”로 “등을 고려하여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”를 “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”로 한다,

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.

1. 장례비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2. 치료비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·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

제4조의3(구상에 따른 책임)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 중 “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”를 “원인제공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”을 “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”으로 한다.

부칙 “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를 “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”로 한다.

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기준)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4조(지원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</u>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, 피해상황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대책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	② ----- <u>지원 기준은</u> ----- ----- ----- <u>등을 고려한 비용</u> <u>으로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.</u>
	<u>1. 장례비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</u>
	<u>2. 치료비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</u>

<신 설>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
기준과 장례비·치료비 지원의
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
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<신 설>

제4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구청장은
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
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에게
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
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
청구한다.

<신 설>

제4조의3(구상에 따른 책임) 원인
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
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
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
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
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
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
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재난피해자
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
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
원금을 지급하거나, 사회재난으
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
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
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

제5조(중복지원 금지) -----

----- 원인제공자 -----

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	----- -----.
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 ① <u>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</u> (이하 “생활안정지원등”이라 한다)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. ② ~ ⑥ (생 략)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신 설>	제6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 ① <u>생활안정지원, 간접지원 및 장례비·치료비 지원</u>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 (현행과 같음) <u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 <u>제2조(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)</u> <u>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.</u>